의 안 번 호	제16호
의결 연월일	2019. 3. 21.

-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3월 6일 서원 의원 외 4명

나. 회 부 일 자: 2019년 3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9년 3월 21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, 과업수행, 최종 성과품의 납품·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O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용역과제의 선정,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- 위원회의 기능·운영, 위원의 해촉등 위원회관련 사항(안 제7조 ~ 제14조)
- 용역실명제,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등 용역관련 사항(안 제15조 ~ 제20조)
- 시행규칙(안 제21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